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
(이달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79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 의 자 : 이달희 · 김대식 · 김상훈  
김종양 · 서천호 · 박형수  
최보운 · 윤재옥 · 이진숙  
임이자 · 서일준 의원  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제도와 법령의 개선, 게임산업의 기반조성,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추진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1항).



법률 제 호

##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수립”을 “5년마다 수립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